

주요 지원내용

구분		일반		특별고용지원 업종
고용유지 지원금 (유급휴업· 휴직)	지원 수준	우선지원대상기업 2/3 대규모기업 1/2~2/3		우선지원대상기업 90% 대규모기업 2/3~3/4
	지원 한도	1일 6.6만원		1일 7만원(대규모기업 6.6만원)
고용유지 지원금 (무급휴업)	지원 요건	① 무급휴직 실시(90일)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(3개월)		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(1개월)
직업훈련	사업주 훈련 지원	지원 한도	납부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240%)	납부보험료의 130% (우선지원대상기업 300%)
		훈련비 지원 단가	우선지원대상기업 100%, 1,000인 미만 60%, 1,000인 이상 40%	우선지원대상기업 150%, 1,000인 미만 100%, 1,000인 이상 90%
	국민 내일 배움 카드	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		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~20%
	훈련 연장 급여 요건	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94조제1항 제1호~제4호 요건 모두 충족		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
생계비 대부 한도	1명당 1천만원		1명당 2천만원	

구분		일반	특별고용지원 업종
고용·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		납부기한 연장 X 체납처분 집행유예 X	납부기한 연장 O 체납처분 집행유예 O
건강보험료 (보건복지부)		건강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X	건강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O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		부과 (1명당 3만원)	면제
취업성공패키지II		중위소득 100% 이하 참여	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
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용자	소득요건 (*)	(임금감소·소액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 (‘20년 월 181만원) (이외 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‘20년 월 259만원)	(임금감소·소액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 (‘20년 월 222만원) (이외 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‘20년 월 317만원)
	상환기간	최대 5년(거치 1년/상환 3~4년)	최대 8년(거치 1~3년/상환 3~5년)
	한도액	(임금채불생계비) 1천만원 (자녀학자금) 연 5백만원	(임금채불생계비) 2천만원 (자녀학자금) 연 7백만원
	대상자	(자녀학자금) 고등학생 자녀	(자녀학자금)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
고용촉진장려금		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	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
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	지원대상	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	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

* 「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과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(‘20.2.28.)」에 따라 한시적(‘20.3.9.~7.31.)으로 임금감소·소액생계비 등 모든 생활안정자금 용자 시 소득요건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(‘20년 월 388만원)로 완화